

2021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공모

지역문화진흥원은 국민이 문화예술 향유 수혜자를 넘어
주체자로서 직접 참여하는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의 밑바탕을 만드는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운영할
단체를 공개 모집하오니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2월 1일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생활문화동호회 중심의 생활문화 주체 간 교류·협력 활동을 통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
- 사업명:** 2021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1년 2월~2021년 12월
- 지원기간:** 교부일(2021년 4월 예정)~2021년 11월
※ 2021년 11월 30일(화)까지 사업 완료, 2021년 12월 20일(월)까지 정산실적보고
- 지원대상:** 생활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민간 단체·시설
- 지원내용:** 생활문화동호회 교류·협력 활동
- 지원규모:** 398백만원/28개 단체 내외(단체당 10백만원~20백만원 차등 지원)
※ 같은 기간 진행되는 '생활문화사업 통합 지원' 공모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한 금액보다 지원 결정 금액이 적을 수 있음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
- 사업문의:**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 02-2623-3140, 3105, ✉ kej@rcda.or.kr)

생활문화, 생활문화동호회

-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2호)
 - 예술장르로 구분되지 않는 모든 문화 활동
 - 문화가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제시된 것을 지양하고 일상성과 자발성을 통한 주체적 문화활동 (지역문화진흥원, 2019,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안 연구')
- **생활문화동호회란?** 별도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예술 취미 또는 관심사를 공유하는 3인 이상의 모임

II. 사업내용

□ 사업기간: 교부일(2021년 4월 예정)~2021년 11월

※ 2021년 11월 30일(화)까지 사업 완료, 2021년 12월 20일(월)까지 정산실적보고

□ 사업내용

○ 생활문화 교류·협력 활동

<예시>

생활문화동호회와 지역 생활문화 주체(주민, 동호회, 단체, 공동체 등) 간 협력 활동(전시, 발표, 축제, 공유회, 생활문화 원탁회의, 베품시장, 함께하는 인생식탁, 정서적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문화동호회의 사회 공헌 활동 등)

○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예시>

- ① 지역 특유의 자원(벚꽃, 말총, 조개껍질, 바다표류물 등)을 활용한 생태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 ②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생활문화 활동(마을 설화 인형극, 마을 역사 동화책 만들기 등)

○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창의적 생활문화 활동 지원

<예시>

① 생활문화 영역의 확장

- (*새활용) 폐자전거로 나만의 자전거 만들기, 자전거 정비 버스킹 등 올바른 자전거 문화 인식 확산
*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을 더하여 활용 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냄
- (농업놀이) 도심에 텃밭이나 자투리 공간을 찾아 농작물을 키우며 마음의 휴식을 얻음
- (적정기술) 난방용품, 공기청정기 등의 제작기술 공유 및 나눔
-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의 장난감, 옷을 만들어 전시 및 기부
- (비건문화) 채식 식단 공유 및 동물 성분을 제외한 화장품 만들기 등을 통해 건강 챙김, 동물복지, 환경보호 등의 인식 확산

② 새로운 방식의 생활문화 활동

- 생활문화 체험 꾸러미 만들어 나누기
- 가상 합창(버추얼 합창)
- (비대면 음악회)베란다 음악회, 주차장 음악회

※ 위의 3가지 유형 중 1개 이상의 유형을 선택하여 사업계획 수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상황이 보편적 상황임을 고려하여 계획 작성**

※ **새로운 방식/장르의 생활문화 활동 발굴**을 위한 심사 배점 부여

※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사진, 공예, 전통예술 등 기존의 예술 장르 동호회 활동 지원은 16개 광역시·도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본 문서 3쪽을 참고하여 각 광역 시도 주관단체에 문의) 지원 권장

※ 지역 생활문화 생태계 차원에서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민간 단체·시설은 **'2021 생활문화사업 통합 지원 공모'**(지역문화진흥원 공지사항-공모사업) 지원 권장

<2021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명: 2021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예술동호회 활동을 통한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적 역량 강화* 및 지역문화 주체로의 성장 도모, 국민에게 문화예술 분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관계망 형성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속성 확보
 - * (문화·예술적 역량 강화) 기능적 예술 기량 향상이 아닌 동호회 활동을 통한 자기표현, 소통, 타인과의 관계 형성 등 공공성에 기반한 사회적 관심 등 포함
- 사업내용: 예술동호회 교류·협력을 통한 교육, 전시, 발표 등 활동 지원
- 사업규모: 총 3,740백만원(국비 1,800백만원, 지방비 1,940백만원)
- 지원방법: 공모를 통한 지원 또는 직접 지원(2월~3월 중 지역별로 추진)
 - ※ 지원내용 및 방식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세부 내용은 각 주관단체에 문의 바람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전국 16개 광역 시도 지자체/16개 지역 주관단체
-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광역시도	지역 주관단체		총예산 (국비+지방비)
		주관단체명	주관부서	
1	부산	부산문화재단	문화공유팀	220
2	대구	대구문화재단	시민문화팀	280
3	인천	인천문화재단	시민문화부	200
4	광주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240
5	대전	대전문화재단	생활문화팀	200
6	울산	울산문화재단	지역문화팀	200
7	세종	세종시문화재단	생활문화팀	100
8	강원	강릉문화원	문화예술교육팀	380
9	충북	충북문화재단	생활문화팀	520
10	충남	충남문화재단	예술교육팀	200
11	전북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200
12	전남	전라남도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200
13	경북	경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	200
14	경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역문화팀	200
15	경기	경기문화재단	상상캠퍼스팀	200
16	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	일상문화팀	200

※ 지역 주관단체 부서는 단체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불가 프로그램

- 기량 습득을 위한 단순 교육, 강좌
- 참여하는 동호인 및 동호회 단체 사례비 지급 행사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 활동
- 타 행사의 부대 프로그램 또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행사
- 지원 사업 예산을 상금 및 경품으로 지급하는 행사
- 공공성을 저해하는 개별 동호회 또는 개인의 활동

Ⅲ. 공모내용

- **공모명:** 2021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 **신청자격:** 생활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민간단체, 생활문화시설
 -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단체만 지원 신청 가능
 -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유관기관 등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유사 사업 중복 지원 불가
 - ※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은 본 문서 3쪽을 참고하여 각 광역 시도 주관단체에 문의
- **신청기간:** 2월 1일(월)~2월 26일(금) 17시
 - ※ 시간 엄수(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완료' 되었는지 확인 필수)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서류 제출
 - ※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공모명('2021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검색
 - ※ 공모신청 시 e나라도움 회원가입, 단체등록 등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 바람
 -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 e나라도움 홈페이지 내 메뉴얼 참조, 온라인 질의응답, 상담센터 ☎ 문의 1670-9595, 02-6676-5100, gukgobojohelp@korea.kr
 - ※ e나라도움 외의 수단으로는 일체 접수받지 않음
- **제출서류**
 - ① 공모신청 공문 [자체서식]
 - ②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정서식]
 - ③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지원규모:** 단체당 10백만원~20백만원 / 28개 단체 내외
 - ※ 심의에 의해 신청한 금액보다 지원 결정 금액이 적을 수 있음
-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 심의(사업계획 발표)
 - ※ 1차 서류심사에서 최종 선정 수의 1.5배수 내외 선정 예정
- **사업신청서 작성 방법**
 - **(사업계획)** 사업 목적 및 사업 예시, 심사기준 등 사업내용과 공모내용을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 ※ 사업신청 전에 사업에 참여할 주체(생활문화동호회, 협력단체, 주민 등)와 지원사업 목적 및 방향, 목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나눈 후 반영할 것
 - **(예산편성)** 붙임 <보조금 예산 편성 항목 및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단체 당 10백만원~20백만원) 내에서 편성
 - (편성 비율 상한) 초단기인력활용비(지원금의 5% 이내), 전문가 활용비(지원금의 30% 이내), 소모품 구입(지원금의 10% 이내), 임차료(지원금의 30% 이내), 사업 추진비(지원금의 5% 이내) ※ 기준 준용 여부 심사에 반영 예정

□ 사업계획 작성 시 고려사항

- 생활문화동호회의 주체성을 향상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마련
- 개별 동호회의 활동 지원이 아닌, 복수의 동호회와 지역 내 다양한 생활 문화 주체 간의 교류와 협력 활동 지원
- 생활문화 활동을 통한 생활문화의 가치(삶의 질 향상, 마음 치유, 자신감 회복 등) 확산 목적의 계획 지향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일상 속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향
- 결과보다 참여자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과정 중심 활동 장려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업추진 과정 기록

□ 예산예시

- (일반수용비) 전문가 활용비, 초단기인력 활용비, 홍보물 제작, 협력 활동 재료비 등
- (임차료) 음향 및 영상 장비, 소품공간 임차비, 온라인 프로그램 진행 시 화상 회의 시스템 이용료 등
- (사업추진비) 교류 및 협력 활동 시 필요한 다과 및 식대
※ 붙임 <보조금 예산 편성 항목 및 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편성

□ 기타 유의사항

- 해당 공모 선정과 관련하여 외부 청탁이 있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접수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교부된 이후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관, 단체, 시설의 경우 지역 및 지원대상 안배를 위해 선정 과정에서 후 순위로 고려될 수 있음
- 선정 후에도 컨설팅 등을 통해 교부신청 시 사업계획 및 예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역문화진흥원이 진행하는 타 지원사업에 참여한 후 정산·실적보고를 완료하지 못한 단체가 선정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정산을 완료한 후 교부 예정

IV. 선정계획

- 선정규모: 28개 단체/398백만원 내외(단체당 10백만원~20백만원 차등 지원)
- 선정방법: 생활문화·지역문화 관련 외부 전문가 5명의 심의에 따라 선정
- 선정절차: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 심의
 -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선정 수의 1.5배수 내외 선정
 - ※ 서류심사 합격 단체는 인터뷰심사 전 사업계획 발표 자료를 작성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서류심사 합격 단체에 별도 안내 예정)
 - 인터뷰심사: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사업 책임자 질의·응답을 통한 단체 심의, 단체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온라인 방식)
 - ※ 본 사업에 신청한 단체가 '2021 생활문화사업 통합 지원 공모'(지역문화진흥원 주관) 또는 '2021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광역시도 주관단체 주관)에 선정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 최종 심의에 합격하여 선정된 단체라도 우리 원은 사업 목적 및 방향에 따라 선정단체에게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심의기준(안)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100)
사업의 필요성 및 이해도	· 지역 내 생활문화 특성 및 현황 분석을 통한 사업의 필요성 · 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의 적절성	20점
계획의 적절성	· 생활문화 활동 계획의 적절성 · 예산계획의 적정성, 합리성 · 새로운 영역, 창의적인 내용의 생활문화 활동	40점
내용의 실현가능성	· 추진체계의 규모, 역할의 적절성 · 담당 인력 및 운영의 안정성 · 추진일정 및 절차의 적절성(비대면 방식 대응 등)	30점
기대효과	· 지역 내 생활문화 협력 관계망 형성 가능성 · 생활문화 활동을 통한 문화적 교류 활성화 기여 가능성 · 지역사회 내 생활문화 활동 확산 가능성	10점

※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실적이 우수한 동호회 선정하여 차년도 사업 신청 시 인센티브 부여

- 평가방법: 기준에 따른 심의위원별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최종 점수 산출
- 선정기준: 70점 이상 득점(총점 100점의 70%) 단체 상위 단체 선정
 - ※ 동점자 발생 시, 1)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에 의거하여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 우선 선정, 2) 심의위원 논의를 통해 결정

□ 선정단체 필수 이행사항

- 선정단체 예비교육 참석(3월 30일(화), 온라인 예정)
- 추진현황보고서 제출(총 4회 / 6월, 8월, 10월, 11월 말 예정)
- 코로나-19 확산 시 정부 및 지자체, 우리 원의 지침 준수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보완
 - ※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변경 시 사업 담당자와 협의해야 하며, 변경 정도에 따라서 차년도 사업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성과공유회 참석(10월 예정)
- 사업선정 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프리랜서 등 포함)은 성폭력·성희롱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와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제출(추후 양식 제공)
- 예술인고용보험 납부 및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지역문화진흥원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2021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준수(예비교육 시 배포)
- 사업성과 관리 및 홍보를 위해 우리 원이 수시로 요청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

□ 아래의 경우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체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 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단, 대표권이나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형실효법 제 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의1, 제1항

V. 주요 추진일정(안)

항목	일정	세부내용
신청접수	2.1.(월) ~ 2.26.(금) 오후 5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 ※ 모든 서류가 구비·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		
행정검토	3.1.(월) ~ 3.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방법: 서류미비 및 제출지연 등 심사 자격 검토
↓		
서류심의	3.9.(화) ~ 3.11.(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 5명(지역문화·생활문화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심사방법: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 최종 선정 수의 1.5배수 내외 선정 ■ 서류심의 합격단체 발표: 3.15.(월) 오후6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원 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및 문자 - 인터뷰 심의 일정 및 발표 자료 제출 안내
↓		
인터뷰심의	3.18.(목) ~ 3.19.(금) - 진흥원 중회의실 (화상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준비물: 사업계획 발표 자료(PPT 파일-서식 차후 배부) ■ 심사방법: 단체별로 사업계획 주요 내용 발표 →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질의·응답을 통한 심의 → 단체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 추진) ■ 선정단체 발표: 3.23.(화) 오후6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원 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또는 문자 - 선정단체 예비교육 일정 확정하여 함께 안내
↓		
선정단체 예비교육	3.30.(화) - 온라인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사업계획 협력 기획, 지원금 관리지침 주요 내용 안내, 선정단체 교류 등 ※ 선정단체 필수 참석, 불참 시 선정을 취소함
↓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4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내용 반영한 사업계획서 보완하여 교부신청 ■ 보조금 통장개설 및 보조금 전용카드 신청 ■ 교부신청 및 교부확정 ■ e나라도움에 사업등록 및 교부 신청, 승인 ※ 세부절차는 선정단체 예비교육에서 안내
↓		
지원금 교부	교부신청 승인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개설 확인 후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예치형) ■ 교부 후 사업 개시(지원금은 두 차례로 나누어 교부함)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 |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 kej@rcda.or.kr / ☎ 02-2623-3140, 3105)

※ 문의 내용의 정확한 파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가급적 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회의 등으로 인해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전화 문의는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중 요망 (단, 점심시간 오후 12시~오후 1시)

붙임. 2021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 예산편성 항목 및 기준

□ 예산편성 기본 원칙

기본원칙	세부 내용
당해 연도 내 사업집행 완료	- 보조사업은 당해 연도 안에 추진이 완료되어야 함 - 지원금은 2021년 11월 30일(화) 내 집행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금 교부 이전 사업집행내역 불인정	- 보조사업자는 지원금 교부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집행 내역을 지원금 사용 내역에 계상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유로 우리 원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포괄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함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용역·하도급 집행 금지	-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집행기준 및 방법 준수	-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지원금 사용 규모는 본 <지원금 관리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책정해야 함
사업과 직접 관련 경비만 사용 가능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아래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용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대표 및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집기 구매, 전기·수도 공과금, 전화 요금 등 단체 운영 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 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개·보수비), 전화(인터넷) 설비 등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 상금 및 상품권, 경품, 상품 등 시혜성 물품 구매, 현물 집행 - 상금이나 경품을 주는 경연 행사 심사비 등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액을 공제/환급받는 일반 과세사업자는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 미공제/미환급 받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후 편성 가능하며, 다음 해에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관련 증명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사항	-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지원금 전용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보조금 예산 편성 항목 및 기준

- ※ 아래에 제시된 비목/세목 외 타 비목/세목 편성 불가
- ※ 부가가치세를 사후 공제·환급받는 단체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 ※ 아래 제시된 기준 금액은 참고 자료이며, 사례별로 현실을 반영하여 적용
- ※ 인건비성 경비는 상황에 따라 아래의 기준보다 하향 지급은 가능하나 상향 지급 불가

보조 비목	보조 세목	항목 및 내용	기준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인력(초단시간 근로자) 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시간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고용한 인력 활용비 - 1인 1시간당 8,720원 - 단, 1인 당 최대 주15시간(1개월 60시간) 미만 준수 ※ 단체 내부인력(대표 및 상근직원)에 지급 불가 ※ 동일 인물에게 전문가 사례비 지급 불가 	지원금의 5%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 사례비(인건비 등)는 편성할 수 없음 ※ 동호회 또는 동호인에게 전문가 사례비를 편성·지급할 수 없음 ○ 전문가 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강 강사 사례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60%;">기준</th> <th style="width: 30%;">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A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td> <td>300,000원</td> </tr> <tr> <td>B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기능대) 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정부 출연기관(연구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재단법인 재직자 · 개인기관의 장(원장, 소장) ·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 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 </td> <td>200,000원</td> </tr> <tr> <td>C급</td> <td>· A, B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강사급</td> <td>100,0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시간 초과 시 1시간 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 가능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자차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 - 토론회, 포럼 등 학술행사 사례비(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60%;">기준</th> <th style="width: 30%;">사례비(한도) (1회 3시간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발표자</td> <td>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400,000원</td> </tr> <tr> <td>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300,000원</td> </tr> <tr> <td rowspan="2">사회자</td> <td>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300,000원</td> </tr> <tr> <td>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200,000원</td> </tr> <tr> <td rowspan="2">토론자</td> <td>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200,000원</td> </tr> <tr> <td>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150,000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만 원씩 지급 가능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A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300,000원	B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기능대) 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정부 출연기관(연구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재단법인 재직자 · 개인기관의 장(원장, 소장) ·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 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 	200,000원	C급	· A, B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강사급	100,000원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3시간 기준)	발표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4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사회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토론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A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위원,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300,000원																													
B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기능대) 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정부 출연기관(연구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재단법인 재직자 · 개인기관의 장(원장, 소장) ·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 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 	200,000원																													
C급	· A, B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강사급	100,000원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3시간 기준)																													
발표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4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사회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토론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50,000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항목 및 내용	기준																																						
일반 수용비 (01)		<p>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자차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p> <p>- 회의 참석 사례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회의참석 수당</td> <td>· 자문회의 등</td> <td>150,000원</td> </tr> </tbody> </table> <p>※ 2시간 초과 시 초과회의비(5만 원) 지급 (1일 총 20만 원)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자차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 ※ 사업에 참여하는 생활문화인 및 동호회 등에 사례 불가</p> <p>- 행사 진행 사례비(사회자 사례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사례비(한도) (1일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행사 사례비</td> <td>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300,000원</td> </tr> <tr> <td>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200,000원</td> </tr> <tr> <td>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100,000원</td> </tr> </tbody> </table> <p>※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자차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p> <p>- 컨설팅 사례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컨설팅 사례비</td> <td>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300,000원</td> </tr> <tr> <td>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200,000원</td> </tr> <tr> <td>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td> <td>100,000원</td> </tr> </tbody> </table> <p>※ 2시간 초과 시 1시간당 10만 원씩 지급 가능(1일 최대 4시간)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자차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p> <p>- 원고료</p>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준 1(원고 집필인)</th> <th>기준 2(원고 내용)</th> <th>사례비(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전문 작가 · 해당분야 전문가 · 특강 강사 사례비 지급 기준 A급</td> <td>· 고급원고 (안재물 전문가 지식 수록 전문가 칼럼 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td> <td>200자 원고지 1장 당 20,000원</td> </tr> <tr> <td>· 해당 분야 유경험자 · 전문가 수준 필자</td> <td>· 일반원고 (작성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원고)</td> <td>200자 원고지 1장 당 15,000원</td> </tr> <tr> <td>· 일반인, 독자 외</td> <td>· 자료원고 (자료를 발췌·참고·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한 원고)</td> <td>200자 원고지 1장 당 5,000원</td> </tr> </tbody> </table> <p>※ 위 2개 기준 중 1개 기준 적용</p>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회의참석 수당	· 자문회의 등	150,000원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일 기준)	행사 사례비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00,000원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컨설팅 사례비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00,000원	기준 1(원고 집필인)	기준 2(원고 내용)	사례비(한도)	· 전문 작가 · 해당분야 전문가 · 특강 강사 사례비 지급 기준 A급	· 고급원고 (안재물 전문가 지식 수록 전문가 칼럼 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20,000원	· 해당 분야 유경험자 · 전문가 수준 필자	· 일반원고 (작성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15,000원	· 일반인, 독자 외	· 자료원고 (자료를 발췌·참고·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한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5,000원	(전문가 활용비 합계) 지원금의 30% 이내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회의참석 수당	· 자문회의 등	150,000원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일 기준)																																						
	행사 사례비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00,000원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컨설팅 사례비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00,000원																																							
기준 1(원고 집필인)	기준 2(원고 내용)	사례비(한도)																																							
· 전문 작가 · 해당분야 전문가 · 특강 강사 사례비 지급 기준 A급	· 고급원고 (안재물 전문가 지식 수록 전문가 칼럼 독창적인 내용의 우수한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20,000원																																							
· 해당 분야 유경험자 · 전문가 수준 필자	· 일반원고 (작성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15,000원																																							
· 일반인, 독자 외	· 자료원고 (자료를 발췌·참고·인용 및 재가공하여 작성한 원고)	200자 원고지 1장 당 5,000원																																							
운영비 (210)		○ 사업기록비																																							
		- 사진, 영상기록비 등																																							
		○ 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배너, 브로슈어 등																																							
		※ 기념품, 판촉물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편성 및 집행 불가																																							

보조 비목	보조 세목	항목 및 내용	기준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모성 물품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방역을 위한 소모품 등 ※ 비소모성 물품 구입비 편성 불가 	지원금의 1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검증수수료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비</th> <th>수수료</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3천만 원 미만</td> <td>300,000원</td> <td>※ 부가가치세 포함</td> </tr> </tbody> </table>	사업비	수수료	비고	3천만 원 미만	3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필수 편성																
	사업비	수수료	비고																						
3천만 원 미만	3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사업 참여자(동호회, 주민 등)의 행사 답사, 견학 등을 위한 입장료, 관람료 편성 불가 																									
임차료 (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크숍, 발표회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장소 임차료(단기성) 음향, 조명, 전기 등 시스템, 화상회의의 시스템 및 차량 임차료 등 ※ 단체 소유의 기자재 및 소품 임차료 편성 불가 	지원금의 30% 이내																						
여비 (220)	국내 여비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관련 출장경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역</th> <th>지급방법</th> <th>지급액(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관내</td> <td rowspan="2">일비</td> <td rowspan="2">정액</td> <td>- 4시간 미만 : 10,000원/1일</td> </tr> <tr> <td>- 4시간 이상 : 20,000원/1일</td> </tr> <tr> <td rowspan="4">관외</td> <td>교통비</td> <td>실비</td> <td>- 대중교통비(고속버스, KTX 등) 지급 · 일반실 기준(프리미엄 또는 특실 이용 불가)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연료비, 통행료 지급 · 연료비 산출방법: 여행거리(km)×유가÷연비</td> </tr> <tr> <td>숙박비</td> <td>실비 (1박당)</td> <td>- 서울특별시 : 70,000원/1박 - 광역시 : 60,000원/1박 - 그 외 : 50,000원/1박</td> </tr> <tr> <td>식비</td> <td>정액</td> <td>- 20,000원/1일</td> </tr> <tr> <td>일비</td> <td>정액</td> <td>- 20,000원/1일</td> </tr> </tbody> </table>	구분	내역	지급방법	지급액(한도)	관내	일비	정액	- 4시간 미만 : 10,000원/1일	- 4시간 이상 : 20,000원/1일	관외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고속버스, KTX 등) 지급 · 일반실 기준(프리미엄 또는 특실 이용 불가)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연료비, 통행료 지급 · 연료비 산출방법: 여행거리(km)×유가÷연비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 70,000원/1박 - 광역시 : 60,000원/1박 - 그 외 : 50,000원/1박	식비	정액	- 20,000원/1일	일비	정액	- 20,000원/1일	
		구분	내역	지급방법	지급액(한도)																				
		관내	일비	정액	- 4시간 미만 : 10,000원/1일																				
					- 4시간 이상 : 20,000원/1일																				
		관외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고속버스, KTX 등) 지급 · 일반실 기준(프리미엄 또는 특실 이용 불가)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연료비, 통행료 지급 · 연료비 산출방법: 여행거리(km)×유가÷연비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 70,000원/1박 - 광역시 : 60,000원/1박 - 그 외 : 50,000원/1박																				
식비	정액		- 20,000원/1일																						
일비	정액		- 20,000원/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비는 본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에게만 지급 가능(전문가를 활용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경우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일반수용비에서 편성 및 집행) ※ 관외출장 시 식사를 대접받거나 다른 예산과목을 통해 식비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식비 지급 시 그 금액을 제외(1식 6,600원) - 관내 기준: 단체 사무실 기준으로 왕복 2km 이상 12km 미만 거리의 출장 ※ 관내여비는 정액 지급하므로, 별도의 주유비 또는 택시비 지급 불가 ※ 관외 또는 관내 출장 시, 일비를 지급하므로 택시비 편성 및 집행 불가 ※ 관내여비 지급 한도는 1인 1개월 기준 5만 원 이내(초과 시 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원 주관 성과공유회 참석을 위한 여비(최대 2인 편성 가능)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다과비 및 간담회비(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1인 1일 기준 - 식대 기준단가: 10,000원/1인 1일 기준 ※ 1인 1일 최대 15,000원 	지원금의 5% 이내																						